



감 사 사 례 집



외계·계약 분야

1. 계약서 작성 부실	6
2.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6
3. 사업계획 수립 부실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7
4. 사무관리비 지출과목 부적정	8
5.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8
6. 전결권자 부적정	9
7. 사전품의 및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9
8. 구매처 편중에 관한 사항	10
9. 지출원장과 자산대장과의 연계성 결여	10
10. 지출 및 수입금 일일마감 소홀	10
11.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11
12. 청렴서약서 징구 누락	11
13. 현금 지출 부적정	11
14. 지출증빙 서류 구비 및 보관 부실	12
15. 상가 임대 대부료 산정 부적정	12
16. 수입금 과오납금 반환 부적정	13
17.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부실	13
18.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14
19.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검토 소홀	14
20. 원가계산 부적정	15
21. 현금 수입금 출납업무 부적정	15
22. 설계변경 계약 소홀	16
23. 공사 안전관리비 관리 소홀	16
24.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누락	17

25. 가로등 램프 하자보증 확인 소홀 17

26. 회계기관의 분립 위배 18

27. 전도자금 잔액 과다 18

28. 유가증권 보관 소홀 18

■ 시설물유지·관리 분야

29.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9

30. 도서 도난방지 및 안전관리 미흡 19

31. 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20

3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미 이행 20

33.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 21

34. CCTV 관리대장 미작성 21

35. 폐자재 관리 소홀 22

36. 수영풀 안전 경고표지 미설치 22

37. 시설물 점검 및 정비 부실 22

38. 공영주차장 CCTV 관리상태 부실 23

39. 공사 감독 소홀 23

40.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24

41. 인명구조기구 및 비상구급품 관리 부실 24

■ 일반운영·사무관리 분야

42. 차량관리·점검 소홀 25

43. 장사시설 사용 증빙 미비 25

44. 사업장 관리계획 미수립	26
45.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26
46.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6
47. CCTV임대 용역 관리 소홀	27
48. 폐기물 관리 소홀	27
49. 사고 보고 미이행	27
50. 피복지급 대상자 수령 미확인	28
51. 차량부품 입출고 관리 부실	28
52.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적정	29
53.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미이행	29
54. 정비실 자재관리 부실	30
55. 아동·청소년 정보호를 위한 성범죄 경력 확인 소홀	30
56.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31
57. 전산장비 관리 매뉴얼 부실	31
58. 금권관리 소홀	31
59. 임대시설 보험 가입 소홀	32
60. 민원처리 소홀	32
61. 수상안전요원 채용 자격요건 미확인	33
62. 민간위탁 노외주차장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33
63. 시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34
64. 근무변경 확인 소홀	34
65. 공제등록 및 재물조사 관리 부적정	35
66. 소모품 관리 부실	35
67. 홈페이지 민원처리 위임전결 위반	35
68. 고객관리직 고용관리카드 등 미작성	36
69.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36

70. 체납금 관리 소홀	36
71. 주차권 분실 공고 지연	37
72. 호이스트 안전인증 미실시	37
73. 내규 개정 소홀	38
74. 법률고문 등 운영실적부 관리 소홀	38
75. 운전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9
76. 물품관리 소홀	39
77. 정부권장제품 구매실적 부진	40
78. 시설운영관련 근거자료 관리 부실	40

■ 경영개선 분야

79. 나드리콜 차량 수선계약에 관한 사항	41
80. 화장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	41
81. 시티투어이층버스 승강장에 관한 사항	42
82.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2
83. 차량 및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42
84. 헬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	43
85.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43

[회계 · 계약 분야]

1 계약서 작성 부실

계약서에는 회계관직의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 및 부속서류에는 양 당사자가 날인을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전도자 금출납원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분임물품출납원의 인장을 사용하였고, 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양 당사자가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의 날인만 된 사실이 있음.

2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은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로 집행할 수 있고,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대회, □□□의 행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및 강사에 대한 노고 격려(간담회) 식대로 1,683천원을 집행하였고, ○○○대회 개최 시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령자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경품수령인에 대한 내역을 첨부하지 않았음. 또한 ◇◇◇ 시상금 및 ●●●대회 시상금 및 경품수령자에 대한 수령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

3 사업계획 수립 부실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사업운영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손익분석은 기간별 예상손익 및 그 추정근거를 반드시 명시하고,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시장조사시 성실하게 가격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검수는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단위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5. 7. 15부터 2015. 11. 30까지 ○○○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동일업체와 총 5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22,411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사업소에서는 □□□사업 운영계획 수립시 사업성평가에 중요한 손익 분석에 있어 연간 예상수입 및 원재료 지출액을 추정하였으나, 실제 운영결과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현저하게 크고, 추정근거 및 기간손익이 없는 등 부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음.
- △△△사업소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 및 원재료 구입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납품업체로부터 타견적을 대신 받는 등 부실하게 가격조사를 한 사실이 있음.
- △△△사업소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납품시 원재료 구입단위가 아닌 최종산출물 단위로 납품받아 일부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사무관리비 지출과목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임차료, 회의비 성격의 항목은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지출하고, 작업복·위생복·근무복 등 피복 구입 또는 제조경비, 침구류 구입, 안전모·안전화·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 급량비 등은 기타복리후생비로 편성·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휴일에 근무하는 자 등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성격으로써 직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5년 ○○○작업에 따른 경비 지출 외 14건에 대해 급량비 성격의 항목을 기타복리후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5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 최우선이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사용하고, 상기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아닌 최후순위인 견적가격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6 전결권자 부적정

회계규정시행내규 제2조의4(예산집행품의 및 검수보고)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의 경우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는 처·실장의 전결로 집행하도록 하고, 예정금액 50만원 이하는 팀(소, 관, 센터)장의 전결로 집행하도록 규정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6년 간담회비 지출 등 2건에 대해 부서업무비로 50만원 초과 예산집행품의를 하면서 처장 전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7 사전품의 및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품의 결제 후 카드 사용시점(원인행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사업소에서는 2013. 7. 1 ~ 2015. 8. 31 기간 중 총 13건의 부서업무비 지출에 대해 품의 전에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8 구매처 편중에 관한 사항

특정업체와 장기간 지속적인 거래를 지양하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지출 품의시 타인견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타업체에 대한 가격조사 없이 특정업체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9 지출원장과 자산대장과의 연계성 결여

자산대장에 등록할 자산취득가액은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자산취득비 집행액과 일치시키고,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것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구입 외 1건에 대해 자산대장에 해당 자산의 등록을 누락하였고, □□□구입 외 5건에 대해 취득부대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0 지출 및 수입금 일일마감 소홀

공단 회계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매일 마감하도록 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5. 9. 7 ~ 9. 25 기간 중 자금지출기록부와 통장잔액이 불일치하고, 2015. 9. 15 ~ 9. 24 기간 중 일일수입금정산이 미정산 되어 있음.

11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3. 1. 1 ~ 2015. 8. 31 기간 중 ○○○구입과 관련하여 총 21차례(총 18,602천원)에 걸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12 청렴서약서 징구 누락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4조(청렴계약)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1백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점검 외 2건에 대해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의 계약 건임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3 현금 지출 부적정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경비 지출 2건에 대해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 지출을 하였으며 2013. 6. 25자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

14 지출증빙 서류 구비 및 보관 부실

회계규정 제38조(증빙서류의 범위)에 의하면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을 말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영수증으로 사용되는 감열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휘발됨에도 복사를 하지 않아 2013. 5. 9. 간담회 경비 지출 등 5건에 대해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2014. 2. 12. □□□시상금을 현금지출하면서 청구 및 영수서, 시상자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5 상가 임대 대부료 산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하면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해당연도의 재산가격)÷(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점포 임대 입찰 공고 및 계약시 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 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년 대부료 고지시 첫째 대부료를 기준으로 이자도 없이 매월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16 수입금 과오납금 반환 부적정

회계규정 제83조(과오납금 반환절차)에 의하면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이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 1. 8 ~ 2014. 6. 16 기간 중 과오납금 4건 91,500원을 처리하면서 과오납금 반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부자 ○○○관리자에 대해서는 익일 수입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중 납부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익일 수입금 계좌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음.

17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부실

사업 수행을 위한 입찰 공고시 사업계획서 및 공고문 작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5. 6. 23.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시 별도의 과업지시서가 없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공단의 요구사항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또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업체의 제안서에 크게 의존하였고,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에 있어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이 부적절하게 설계된 사실이 있음.

18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차량관리내규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에 의하면 「각 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2014. 8. 28 차량구입비 5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2014. 9. 30 집행함으로써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19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하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에서 수의계약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3~2014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을 시행하면서 입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시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단위당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구청별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결정단가)을 적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업체견적 및 물가정보지 등의 가격을 적용하였고, 수의계약시에는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0 원가계산 부적정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2006. 3. 9, 조달청)에 설계시 제경비를 제외하여 원가계산서에 별도 반영한 사급자재비도 직접공사비의 재료비에 포함하여 제경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회계통첩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2005. 1. 27, 재정정책과-403호)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도 사급자재비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CCTV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CCTV배관배선설치공사와 CCTV자재설치공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CCTV시스템 설비의 자재비를 직접공사비의 재료비에 포함하여 제경비를 적용하지 않고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별도로 CCTV시스템 자재를 사급자재비로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21 현금 수입금 출납업무 부적정

회계규정 제72조 및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징수한 수입금은 익일 오전(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불입하여야 하며, 이 때 현금으로 수납한 수입금을 개인계좌를 거쳐 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서는 안 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2. 4. 20.부터 2014. 7. 31.까지 총 585회에 걸쳐 현금으로 수납한 주차료 수입금 117백만원에 대해 당일 현금 수입금만큼의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주차료 수입금 관리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해당 현금 수입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또한 ○○○사업소 운전원도 2011. 4. 1.부터 2014. 7. 31.까지 총 991회에 걸쳐 73백만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여 승차권판매 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22 설계변경계약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소방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당초 점검항목에서 변경된 내역과 이에 대한 변경용역비 산출 근거를 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하여 4개월간 소방용역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23 공사 안전관리비 관리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의하면 사업주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고시(제2012-23호, 2012. 2. 6)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공사시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화 15켤레를 안전관리비 사용에 적용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었고, □□□공사시 5일간 사용할 전자신호봉 4개에 대해 건전지는 56개나 구매하였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4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누락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에 의하면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대금청구액의 1.5%, 공사·용역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3. 12. 30. ◇◇◇과 계약한 폐기물 처리건 3,960천원 등 총 3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5 가로등 램프 하자보증 확인 소홀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2012. 9. 22) 제21조(보증)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13. 8. 27) 제18조(하자보수)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동안(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3,800개의 나트륨전구를 구매하고, 이 중 1년 이내에 총 165개의 나트륨 전구를 다시 교체한 사실이 있음. 165개의 전구 중 15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제품하자로 교체하였으나, 나머지 150개에 대해서는 제품자체의 하자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확인 없이 교체한 사실이 있음.

26 회계기관의 분립 위배

회계규정 제8조의2(회계담당)에 의하면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외 :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의 관서에서는 세입의 징수와 현금 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 지적내용

- △△△사업소의 2014. 4. 1자 업무분장에 따르면 지출담당자인 ○○○가 ◇◇◇수입금 업무를 겸직하고 있음.

27 전도자금 잔액 과다

전도자금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업소에서는 전도자금의 집행시기,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 요청하여 전도자금계좌에 잔액이 과다하게 적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월말 미집행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 1월부터 2014. 8월까지의 기간 중 4개월간 월 지출액 대비 월말 전도자금 계좌잔액을 100%이상 과다하게 보유한 사실이 있음.

28 유가증권 보관 소홀

회계규정 제67조(금전의 범위) 제2항 및 제72조(금전의 보관)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에서는 유가증권인 도시철도채권 21매(9,760천원)를 관리하면서, 2012. 4. 1부터 2014. 4. 11까지 담당자의 사무실 책상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시설물유지 · 관리 분야]

29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일상점검에 힘쓰고 정기점검과 기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고 유지·관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의 ○○○로 인한 □□□ 소손이 발생하였으나, 최초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직원들은 ◎◎◎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

30 도서 도난방지 및 안전관리 미흡

위탁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난 및 재난·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CCTV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층 및 3층 자료실 서편 창문을 통해 도서 분실의 우려가 있으며, 3층 남편 자료실은 CCTV 촬영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31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 외 6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사업소에서는 ◎◎◎공사 2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공사 외 12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미이행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에 의하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소속 ○○○ 3개소에 대해 기존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2016. 6. 30자로 퇴사하고 소정의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3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이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밀봉·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3. 6. 27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완료 후 6개월마다 석면 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외 2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역 완료 이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4 CCTV 관리대장 미작성

CCTV설치·운영내규 제7조(책임자 등 지정 및 관리)에 의하면 이사장은 CCTV관리부서에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서별 운영책임자는 CCTV 관리대장 및 CCTV열람제공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CCTV열람제공대장은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CCTV관리대장은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5 폐자재 관리 소홀

폐자재는 환경오염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을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제작하였음에도, ◇◇◇, ●●● 등 폐자재를 창고 옆에 방치한 사실이 있음.

36 수영풀 안전 경고표지 미설치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경고문을 게시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공단이 부담하게 될 배상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수영풀에 대해 수심 깊이, 다이빙금지 등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37 시설물 점검 및 정비 부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설 및 응급조치용 장비를 충분히 확보, 비치하도록 하고, 배수로 등 시설물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정비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출입구 재해 대비함에 빗자루와 모래주머니만 있고, 삽이나 제설제가 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아래에 흙 등 퇴적물이 쌓여 막혀 있음.

38 공영주차장 CCTV 관리상태 부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현장 점검한 결과 고장을 적시에 수리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있음.

39 공사 감독 소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1조 제6항에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야간으로 계획되었더라도 주간에 작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주간에 작업하도록 감독했어야 하며, 시공자가 임의로 야간작업을 주간으로 변경하여 작업하였다면 이를 확인하여 설계변경하거나 실작업 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야간작업으로 계획된 일부 구간이 주간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사감독은 작업수량의 조정 없이 기존 설계서대로 준공처리하였고, 정산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0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수목의 이식시에는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토양상태, 이식시기, 수종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초기이식의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 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목관리프로그램에 수목의 변동 상황을 적시에 입력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뒤편 임야에 5차례에 걸쳐 ○○○를 식재하였으나 이중 상당수가 고사하였고, 현재도 일부 고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수목관리프로그램에 수목의 변동 상황을 적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식재시 수량을 입력하지 않아 이후 변동 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함.

41 인명구조기구 및 비상구급품 관리 부실

소방방재청 고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는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 5개와 일반방독면 8개 및 비상구급함 1개를 관리하면서, 비상시 누구나 신속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나, 일반방독면은 사무실에, 비상구급함은 전기실에 각각 보관한 사실이 있음.

[일반운영 · 사무관리 분야]

42 차량관리·점검 소홀

차량관리내규 제16조에 의하면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등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소화기도 매월 점검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이력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한 사실이 없음.
- ●●●사업소에서는 □□□버스를 관리함에 있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기록이 없고, 차량 내 소화기를 별도로 점검한 기록이 없음.

43 장사시설 사용 증빙 미비

사업특성상 담당자가 현금 입출금을 직접 다루는 경우 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관련증빙은 출력후 보관함으로써 향후 감사나 증명에 대비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유무를 담당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뿐 별도로 주민등록표를 출력·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4 사업장 관리계획 미수립

직제규정시행내규에 의하면 처 산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장을 이용해 별도로 관리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처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점검대장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음.

45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 관리 내규 제5조에 의하면 부서관리자는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5. 6월 이전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6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복무규정 제11조(겸업금지의 의무)에 의하면 직원은 공단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함

□ 지적내용

- △△△사업소장은 2012. 2월부터 2016. 2월까지 이사장의 허가 없이 □□□ 회장직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47 CCTV임대 용역 관리 소홀

CCTV임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적시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CCTV임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상 업체가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8 폐기물 관리 소홀

농약 구입시 반드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년 구입한 농약 중 일부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 포장재 폐기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49 사고 보고 미이행

감사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도 그 경위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함

□ 지적내용

- △△△사업소장은 2015. 8. 4.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실장에게도 그 경위를 즉시 통보한 사실이 없음.

50 피복지급 대상자 수령 미확인

피복지급 및 관리내규 제5조에 의하면 「팀·소장은 피복의 지급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복지급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복 지급상황을 개인별로 파악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 4. 22. 춘하복 지급시 피복지급카드상 지급대상자란에 □□□ 외 14명으로 일괄 기입하였고, 수량란의 합계가 불일치하며, 개별 확인을 한 사실이 없음.
- □□□사업소에서는 고객관리직 및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2015년 하계근무복 지급 외 9건에 대해 피복지급카드 확인란에 수령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51 차량부품 입출고 관리 부실

물품관리내규에 의하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물품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차량부품을 관리함에 있어 차량부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품목별이 아닌 일자별로 단순히 부품 입출고를 기록함으로써 품목별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부품의 입출고와 관련하여 별도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는 절차가 없으며, 부품의 수령자가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최종적으로 배부된 수령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

52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에 의하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근거 없이 수집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관리시스템으로 교체를 이유로 기존 시스템의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 6. 23.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정보담당자의 관련사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3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미이행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 제6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에 의하면 공사 진행시 명에 의거 공사감독자를 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감독일지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시공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없이 당해 공사성격에 가장 적합한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시 공사감독자를 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54 정비실 자재관리 부실

공단 물품관리내규에 의하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물품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 자재수불대장의 입출고 내역에 담당자 또는 부서장의 확인이 누락되어 있고, 정비실 내 현황판과 자재수불대장간 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55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성범죄 경력 확인 소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1호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 요청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 7. 5 ~ 2014. 8. 17까지 44일간 2014년 하계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운영요원 41명을 채용하였으나 아르바이트생 41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56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수영강사 등이 연차 등 사유로 부재시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인력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년 수영강사 □□□ 등 12명의 휴무일 117일 중 76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투입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41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인력대장을 비치하지 않음.

57 전산장비 관리 매뉴얼 부실

전산장비 등 관리에 있어 운영 매뉴얼에 화재 등 재난 상황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중앙관제실 운영 매뉴얼은 작성비치하고 있었으나 매뉴얼에 화재 등 재난 상황시 필요한 조치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58 금권관리 소홀

금권관리내규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에 의하면 금권의 인쇄원판은 발간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는 2014년 □□□초대권 인쇄원판을 발간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함에도 2015. 2. 25. 폐기하였고, 2013년 입장권 전산화로 금권 인쇄원판 및 사용 후 남은 불용입장권을 폐기하여야 함에도 금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있음.

59 임대시설 보험 가입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는 사무실 및 식당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였음에 따라 임대업체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체가 가스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음.

60 민원 처리 소홀

민원사무처리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은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운영내규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게재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3일 내에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 등은 2013년부터 2015. 4월까지 총 45건의 홈페이지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가 지연된 사실이 있음.

61 수상안전요원 채용 자격요건 미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기준) 별표6의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수영장업에 의하면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규정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년 하계수영장 운영시 안전요원 12명을 채용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요건과 위배되게 공고하고 고용한 사실이 있음.

62 민간위탁 노외주차장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하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 지적내용

- △△△사업소는 직영 ○○○의 사고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에 대비하였으나, 민간위탁 ○○○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관리수탁자는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등 사고로 인한 배상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민간수탁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63 시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 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2014. 5. 23) 제32조(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에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48조(자재의 보관관리 등)에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는 ○○○보수·보강 공사 외 2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 시험, 반입자재 검사를 하지 않고 시공하여 공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4 근무 변경 확인 소홀

소속 직원의 근무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근무변경사항 발생시 적시에 담당자 및 부서장이 확인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매월 운전원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전원이 근무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변경대장에 기입하여 담당자 및 팀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변경대장 중 일부 근무변경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5 공제등록 및 재물조사 관리 부적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한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 공제등록 가입 검토 및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6 소모품 관리 부실

종량제 봉투 등 주요 소모품을 관리함에 있어 일일 사용량에 대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장당 2,080원인 종량제 봉투를 회당 100~200장을 지급받고도 일일 사용량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사실이 없음.

67 홈페이지 민원처리 위임전결 위반

사무위임전결내규 제4조(전결사항)에 의하면 민원사무(전자민원 포함)는 중요한 사항은 전무이사 전결, 경미한 사항은 팀장 전결로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홈페이지 민원상담센터로 접수된 총 72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4건에 대해서는 팀장 전결로 결재를 득하여 답변하였으나, 68건에 대해서는 팀장 결재 없이 담당자 임의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

68 고객관리직 고용관리카드 등 미작성

고객관리직고용관리내규 제13조(고용관리카드 및 대장)에 의하면 소속부서의 장은 고용관리카드 및 고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고객관리직 및 기간제계약직 16명에 대하여 재임용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고용관리카드 및 고용관리대장에 기록·작성하지 않음.

69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67조(근로계약)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에서는 조경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작업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0 체납금 관리 소홀

점포임대차계약서 제13조 및 지하상가관리규정 제10조(계약해지)에 의하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경비를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서면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 10. 15. 현재 총 324개 점포 중 15개 점포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4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71 주차권 분실 공고 지연

주차장 운영 및 복무에 관한 내규 제14조(주차권 분실)에 의하면 주차장관리자가 주차권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분실사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차권 분실공고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주차장 근무자 ○○○이 2014. 5. 20. 주차권 79매를 분실하고 확인서를 2014. 5. 21 제출하였으나, 분실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9일이 지난 2014. 6. 19.에서야 주차권 분실공고를 한 사실이 있음.

72 호이스트 안전인증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및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예비심사, 서면심사, 제품심사 등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3. 11. 12부터 2014. 1. 14까지 제설자재창고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염화칼슘 적재 및 이동용으로 2.8톤 호이스트를 설치하면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3 내규 개정 소홀

규정관리규정 제9조(입안)에 의하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규정운용부서가 발안하여 규정담당부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는 소관 규정의 개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계획 수립에 따라 해당 내규의 ○○○ 외 2개 조항 등에 개정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소관 내규를 보완하기 위한 내규 개정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4 법률 고문 등 운영실적부 관리 소홀

법률고문 등 운영규정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에 의하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경영지원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지원처장은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에서는 2013. 5. 12.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2014. 4. 11.까지 총 5건을 자문 의뢰하여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에 등록하였으나 나머지 2건은 등록을 누락함. 또한 2013. 5. 1.부터 노무고문 ◇◇◇노무사를 위촉하여 2014. 4. 11까지 총 4건을 자문 의뢰하였으나 4건 모두 사건실적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

75 운전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 운영내규 제24조(준수사항) 제2호 운전원 준수사항에 의하면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 등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운전원 중 일부가 장애인을 태우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2013년 31회, 2014년 상반기에 22회의 속도 및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

76 물품 관리 소홀

물품관리내규 제18조(보관의 원칙)에 의하면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고, 제19조(출납명령)에 의하면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출납부 및 관계장부에 이를 기록유지하거나 전산자료 입력을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사무실 옆 창고에 각종 서류와 주차관제기 부품 등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보관중인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사용 가능한 ○○○ 등 3개 품목, 13개와 사용이 불가능한 □□□ 등 15개 품목, 55개에 대해 취득일자 등이 기록된 관리대장 없이 창고에 방치한 사실이 있음.

77 정부권장제품 구매실적 부진

정부권장제품(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제품, 마을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부서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2014. 1. 1 ~ 9. 26 기간 중 구매 계약에 있어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제품 등의 구매실적이 목표액 대비 현저하게 낮음.

78 시설 운영 관련 근거자료 관리 부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금 정산 등에 필요한 근거자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 규정에 따라 □□ 1발에 대해 연간 5원의 관리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관중인 □□ 출납시 출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용자가 □□ 출납부 서명란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음.

[경영개선 분야]

79 나드리콜 차량 수선 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나드리콜 차량의 수선과 관련하여 2014. 1월부터 2016. 6월까지 총 269건을 권역별로 지정된 □□□지정정비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80 화장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운영방식이나 운영체계를 변경할 경우 변경 이전과 이후의 고객만족도, 시설물 이용률, 설비 변화, 근로 여건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운영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새로운 화장체계를 시행함에 따라 회당 가동기수를 줄이고 가동회수는 늘임으로써 이용객을 분산시켜 시설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으나, 화장로 등 설비 및 근로여건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81 시티투어이층버스 승강장에 관한 사항

승강장 시설물을 통해서 시티투어이층버스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승강장을 보다 잘 보이는 위치에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처에서는 시티투어이층버스 승강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승강장이 가로수목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다수의 이용객이 찾는 장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승강장이 설치된 사실이 있음.

82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예방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시민이 동절기에 바닥 경사면 결빙시 미끄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83 차량 및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로 인해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의해 처분하는 등 자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를 구장비 대체용으로 구입하였으나 오히려 구장비보다 사용률이 낮고, ○○○는 연간 사용횟수가 10회에 불과함.

84 헬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신규사업 투자안에 대해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경우 홍보 등 대응방안을 적극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신설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예상이익과 달리 실제 운영 실적이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침.

85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주차장 부족으로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나 우천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포장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적내용

- △△△사업소에서는 오전시간대에 이용객의 증가로 주차장이 혼잡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운동장이 비포장으로 우천시 토사가 유출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줌.